

[붙임 1]

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

기준(2024)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단위:원

시 간	금액(본인부담금)	구 분	금액(본인부담금)
30분 이상	16,630(2,495)	150분 이상	48,250(7,238)
60분 이상	24,120(3,618)	180분 이상	54,320(8,148)
90분 이상	32,510(4,877)	210분 이상	60,530(9,080)
120분 이상	41,380(6,207)	240분 이상	66,770(10,016)

○ 방문목욕의 1회당 급여비용

구 분	구 분	금액(원)
가정내 입욕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7,670(7,151)

○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
30분 미만	40,760(6,114)
30분 이상 ~ 60분 미만	51,110(7,667)
60분 이상	61,490(9,224)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'24년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 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	7.5%

○ 장기요양인정등급 1,2등급은 방문요양 1회 270분이상(8시간이내) 추가로 월 8회, 3,4등급은 방문요양 1회 210분이상(8시간이내) 추가로 월4회 한도내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

○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한도 외 12시간 이상 20회 사용

장기요양인정등급 1,2등급 수급자는 인지장애여부와 상관없이 20회

장기요양인정등급 3,4,5등급 수급자는 인지장애가 있을 경우 20회 사용가능